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연조건형화





2024년 한눈에 보이는 **몽골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신북방

몽골 MONGOLIA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635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649

03. 비관세장벽 현황_ 652

04. 수출 애로사항_ 659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661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1)2) 01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3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3억 8,461만 달러(한화 약 5조 6,538억 원)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하여 2022년보다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해 2억 3.181만 달러(한화 약 3조 4.070억 원)를 기록 했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60.3%를 차지함
 - * 육류 시장이 규모 1억 1,480억 달러(한화 약 6,678억 원)로 가장 높은 29.3%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채소류(11.8%), 과일 및 견과류(8.5%), 낙농품(8.1%) 순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억 5,280만 달러(한화 약 2조 2,462억 원)로 전체 시장의 39.7%를 차지 하며, 전년 대비 17.1% 증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규모 5,785달러(한화 약 2조 2,462억 원)로 가공식품 시장의 1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집계되었고, 그다음 스낵류(11.9%), 편의식품(7.4%), 소스 및 향신료(3.0%) 순임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단위: 십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435.0	2,588.3	2,802.2	3,312.0	3,846.1	100.0	16.1
신선식품	1,465.7	1,560.1	1,688.2	2,007.1	2,318.1	60.3	15.5
- 육류	708.0	753.1	814.5	973.7	1,148.0	29.8	17.9
- 채소류	280.0	298.4	323.2	385.6	454.3	11.8	17.8
- 과일 및 견과류	211.2	225.0	243.7	283.9	327.4	8.5	15.3
- 낙농품	216.3	230.3	249.3	297.1	311.3	8.1	4.8
- 유지류	50.2	53.3	57.5	66.8	77.1	2.0	15.4
가공식품	969.3	1,028.2	1,114.0	1,304.9	1,528.0	39.7	17.1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61.4	384.6	416.2	490.2	578.5	15.0	18.0
- 스낵류	294.8	311.2	339.0	392.6	458.4	11.9	16.8
- 편의식품	180.4	191.0	205.7	243.2	283.9	7.4	16.7
- 소스 및 향신료	73.7	78.0	84.0	99.7	117.1	3.0	17.5
- 스프레드 및 당류	44.4	47.8	52.3	61.6	71.6	1.9	16.2
- 영유아용 식품	12.2	12.9	13.6	14.1	14.8	0.4	5.0
- 펫푸드	2.4	2.7	3.2	3.5	3.7	0.1	5.7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연령대별 인구 수는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가 약 80만 명, 0-14세 인구가 약 70만 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의 24%와 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여성 인구 수와 남성 인구 수는 동일하게 약 170만 명(약 50.0%)로 집계되어 같은 성비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됨
- 2023년 가구 수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8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2,800 달러(한화 약 411만 원) 규모임
 - 1인당 평균 소비액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전체의 32.1%를 차지하며,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115.9달러(한화 약 164만 원)로 전년 대비 14.5% 증가 했으며, 모든 품목의 소비액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672.5달러(한화 약 99만 원)로 식품에 대한 전체 지출의 60.3%를 차지함
 - * 육류의 비중이 29.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채소류(11.8%), 과일 및 견과류(8.5%)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443.4달러(한화 약 65만 원)로 식품과 관련된 전체 지출의 39.7%에 해당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15.0%로 가장 크며, 이어 스낵류(11.9%), 편의식품(7.4%) 순임

(단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753.2	785.7	837.3	974.6	1,115.9	100.0	14.5
신선식품	453.3	473.6	504.4	590.6	672.5	60.3	13.9
- 육류	219.0	228.6	243.3	286.5	333.0	29.8	16.2
- 채소류	86.6	90.6	96.6	113.5	131.8	11.8	16.1
- 과일 및 견과류	65.3	68.3	72.8	83.5	95.0	8.5	13.8
- 낙농품	66.9	69.9	74.5	87.4	90.3	8.1	3.3
- 유지류	15.5	16.2	17.2	19.7	22.4	2.0	13.7
가공식품	299.9	312.1	332.9	384.0	443.4	39.7	15.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1.8	116.7	124.3	144.3	167.8	15.0	16.3
- 스낵류	91.2	94.5	101.3	115.5	133.0	11.9	15.2
– 편의식품	55.8	58.0	61.5	71.6	82.4	7.4	15.1
- 소스 및 향신료	22.8	23.7	25.1	29.3	34.0	3.0	16.0
- 스프레드 및 당류	13.7	14.5	15.6	18.1	20.8	1.9	14.9
- 영유아용 식품	3.8	3.9	4.1	4.2	4.3	0.4	2.4
- 펫푸드	0.8	0.8	1.0	1.0	1.1	0.1	1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표 2. 1인당 식품 소비액(2019~2023)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유지류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 주요 품목 중 채소류 소비량이 72.8kg으로 가장 크며, 전년 대비 1.4% 증가함
 - * 낙농품 소비량은 38.7kg, 육류 38.1kg, 과일 및 견과류 27.2kg, 유지류 2.3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 펫푸드와 영유아용 식품을 제외한 모든 주요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이 전년보다 증가함.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은 81.6kg으로 가장 많으며, 전년 대비 1.4% 증가함
 - * 뒤이어 스낵류 소비량이 16.9kg, 편의식품 14.1kg, 스프레드 및 당류 7.1kg, 소스 및 향신료 6.4kg, 펫푸드 0.7kg, 영유아용 식품 0.3kg 순으로 집계됨

표 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2023)

(단위: kg,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채소류	67.4	69.1	70.7	71.8	72.8	1.4
1114	- 낙농품	34.6	36.2	37.1	38.0	38.7	1.8
신선 식품	- 육류	34.4	36.0	37.1	37.7	38.1	1.1
식품	- 과일 및 견과류	25.9	26.5	26.8	27.0	27.2	0.7
	- 유지류	2.3	2.3	2.3	2.3	2.3	0.0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76.6	78.9	80.1	80.5	81.6	1.4
	- 스낵류	15.8	16.1	16.6	16.6	16.9	1.8
71.77	- 편의식품	13.4	13.7	13.9	14.0	14.1	0.7
가공	- 스프레드 및 당류	6.5	6.8	7.1	7.1	7.1	0.0
식품	- 소스 및 향신료	5.8	6.0	6.1	6.2	6.4	3.2
	- 펫푸드	0.6	0.6	0.7	0.7	0.7	0.0
	- 영유아용 식품	0.3	0.3	0.3	0.3	0.3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식품 수출액은 8억 2,092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2,068억 원)로 전년 대비 50.0%로 대폭 증가함
 - 중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89.3%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이란 (4.3%), 독일(0.8%), 홍콩(0.7%)과 큰 격차를 보임
 - * 對중국 수출액은 7억 3,306만 8,000달러(한화 약 1조 776억 원)로 전년 대비 51.0%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7%씩 증가함
 - * 對이란 수출액은 3,515만 달러(한화 약 517억 원)로 전년 대비 381.8%로 급격한 증기율을 보였으며, 5개년 연평균 13.6%씩 성장함
 - * 對독일 수출액은 667만 달러(한화 약 98억 원)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36.6%의 성장률을 기록함
 - 對한국 수출액은 415만 8,000달러(한화 약 61억 원)로 집계되어 상위 10순위 중 8위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7.2% 증가함

표	4. 국가별 농식	품 수출현황(2019~2023	3)				(단위 : 취	선 달러, %)
							ᄪ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499,092	349,579	462,352	547,394	820,925	100.0	50.0	13.2
1	중국	453,609	327,381	427,316	485,553	733,068	89.3	51.0	12.7
2	이란	21,138	1,826	1,500	7,295	35,150	4.3	381.8	13.6
3	독일	1,918	403	3,305	6,961	6,670	0.8	-4.2	36.6
4	홍콩	62	2,551	3,694	4,832	5,738	0.7	18.8	210.2
5	러시아	1,480	585	1,029	6,782	5,200	0.6	-23.3	36.9
6	아랍에미리트	1,066	1,668	1,031	1,056	4,965	0.6	370.2	46.9
7	우즈베키스탄	53	22	36	2,913	4,427	0.5	52.0	202.3
8	한국	1,668	996	2,417	3,268	4,158	0.5	27.2	25.7
9	카자흐스탄	466	1,073	1,155	7,183	4,060	0.5	-43.5	71.8
10	일본	3,764	2,799	4,967	3,244	3,354	0.4	3.4	-2.8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 말·당나귀 고기의 비중이 15.3%로 가장 크며 이외 양고기, 쇠고기, 염소고기 등을 여러 형태로 가공한 육류가 순위 상위권에 위치함. 전년보다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품목이 다수 존재함
 - * 말·당나귀 고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2.8% 증가한 1억 2,540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2,068억 원) 규모를 기록함
 - * 탈각한 잣의 수출액은 1억 1,478만 5,000달러(한화 약 1,843억 원)로 전년 대비 43.0% 증기했으며, 전체 수출의 14.0%를 차지함
 - *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는 전년 대비 55,271.4% 증가한 밀기울이 있으며, 그다음으로 조제·보존 쇠고기(1,228.4%), 기타·조제 보존육·석육(632.5%), 절단한 양고기(618.1%) 등이 있음

표 5.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ШХ	증감	ਪ ਛ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499,092	349,579	462,352	547,394	820,925	100.0	50.0	13.2
1	말·당나귀 고기	57,689	33,047	14,443	20,463	125,407	15.3	512.8	21.4
2	탈각한 잣	0	0	0	80,255	114,785	14.0	43.0	43.0
3	기타·조제 보존육·석육	25,379	45,909	31,942	14,547	106,551	13.0	632.5	43.1
4	유채 (저에루크산)	7,664	5,075	1,448	14,327	44,753	5.5	212.4	55.5
5	절단한 양고기	13,961	1,018	1,027	4,947	35,526	4.3	618.1	26.3
6	조제·보존 쇠고기	24,737	12,894	6,485	2,483	32,984	4.0	1,228.4	7.5
7	동물 내장	8,627	9,269	15,356	16,204	11,642	1.4	-28.2	7.8
8	염소고기	2,593	2,639	2,731	4,104	4,680	0.6	14.0	15.9
9	밀기울	3,511	2,865	1,510	7	3,876	0.5	55,271.4	2.5
10	조제식료품	1,653	2,828	3,361	1,681	2,446	0.3	45.5	10.3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농식품 수입액은 10억 5,379만 달러(한화 약 1조 5,491억 원)로 전년 대비 6.8% 감소함
 - 주요 수입국은 23.6%를 차지하는 러시아이며, 뒤이어 중국(22.9%), 한국(11.1%), 폴란드 5.2%) 순임
 - * 러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2억 4,865만 8,000달러(한화 약 3,655억 원)로 전년 대비 11.1% 하락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1.7%로 증가세를 보임
 - * 중국산 수입액은 2억 4,119만 7,000달러(한화 약 3,546억 원)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으며, 5년간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기록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억 1,665만 8,000달러(한화 약 1,715억 원)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며 전체 순위 중 3위를 차지함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비중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643,176	670,027	970,104	1,131,044	1,053,790	100.0	-6.8	13.1
1	러시아	159,767	218,980	344,482	279,735	248,658	23.6	-11.1	11.7
2	중국	131,553	123,770	150,332	218,939	241,197	22.9	10.2	16.4
3	한국	51,864	57,303	76,746	118,432	116,658	11.1	-1.5	22.5
4	폴란드	26,109	26,634	46,665	56,781	54,794	5.2	-3.5	20.4
5	독일	27,115	26,759	42,482	44,162	42,599	4.0	-3.5	12.0
6	카자흐스탄	27,838	14,660	15,377	20,232	25,567	2.4	26.4	-2.1
7	태국	15,481	13,449	16,563	17,949	23,495	2.2	30.9	11.0
8	베트남	19,647	19,016	21,397	28,691	22,696	2.2	-20.9	3.7
9	말레이시아	16,576	14,906	18,264	31,058	22,501	2.1	-27.6	7.9
10	미국	20,052	18,735	27,594	30,148	20,340	1.9	-32.5	0.4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조제식료품(7.7%)이며, 상위 10위 중 절단한 냉동 닭고기와 정미된 쌀 외 품목 대부분이 가공식품에 해당함
 - * 조제식료품 수입액은 8,119만 3,000달러(한화 약 1,194억 원)로 전년 대비 2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 절단한 냉동 닭고기의 수입액은 4,813만 1,000달러(한화 약 708억 원)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의 4.6%를 차지함
 - * 그다음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기타 초콜릿(4.1%), 기타 설탕과자(3.7%), 기타 사탕수수 (3.6%) 등으로 근소한 비중 차이를 보임

표 7.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	2023)
--------------------------	-------

(단위: 천 달러, %)

							111.5	증감	남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643,176	670,027	970,104	1,131,044	1,053,790	100.0	-6.8	13.1
1	조제식료품	58,637	61,673	93,943	102,029	81,193	7.7	-20.4	8.5
2	절단한 냉동 닭고기	24,542	23,201	33,914	45,066	48,131	4.6	6.8	18.3
3	초콜릿(기타)	31,982	31,023	41,944	43,918	43,524	4.1	-0.9	8.0
4	설탕과자(기타)	22,140	18,722	26,007	33,120	38,649	3.7	16.7	14.9
5	사탕수수(기타)	23,018	25,003	35,773	43,081	37,757	3.6	-12.4	13.2
6	쌀(정미)	22,196	28,313	27,932	33,339	35,653	3.4	6.9	12.6
7	스위트 비스킷	16,386	16,068	20,568	28,023	30,763	2.9	9.8	17.1
8	빵(기타)	11,792	12,613	18,455	24,811	28,791	2.7	16.0	25.0
9	파스타	20,137	19,022	20,181	26,167	26,287	2.5	0.5	6.9
10	음료(기타)	17,346	15,297	19,162	31,881	22,886	2.2	-28.2	7.2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의 對몽골 농식품 수출현황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억 1.928만 6,000달러(한화 약 1,754억 원)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94.9%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1억 1,316만 6,000달러(한화 약 1,644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2.2%의 성장률을 기록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몽골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천 달러, %)

						비조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52,840	61,934	82,475	106,031	119,286	100.0	12.5	22.6
농산물	50,670	59,096	79,322	101,866	113,166	94.9	11.1	22.2
축산물	792	1,404	967	1,589	3,115	2.6	96.0	40.8
임산물	1,378	1,434	2,186	2,576	3,005	2.5	16.7	21.5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맥주, 라면, 기타 소스 조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기타 무알코올음료 등이 있음
 - * 맥주 수출액은 874만 2,000달러(한화 약 129억 원)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59.5%씩 성장함
 - * 라면 수출액은 848만 9,000달러(한화 약 125억 원)로, 전년 대비 8.9% 하락했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17.5%를 기록함
 - * 기타 소스 조제품과 기타 조제식료품은 각각 전년 대비 30.9%, 29.2%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동시기에 기타 무알코올음료는 33.6%로 대폭 감소함

표 9. 한국의 對몽골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UI즈	증감	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56,688	66,235	89,762	113,759	127,220	100.0	11.8	22.4
1	맥주	1,350	1,121	3,599	8,773	8,742	6.9	-0.4	59.5
2	라면	4,451	4,379	6,051	9,319	8,489	6.7	-8.9	17.5
3	소스 조제품 (기타)	2,448	2,943	4,061	3,880	5,079	4.0	30.9	20.0
4	조제식료품 (기타)	1,257	1,823	3,848	3,735	4,826	3.8	29.2	40.0
5	기타 무알코올 음료	4,332	3,995	4,740	7,031	4,672	3.7	-33.6	1.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몽골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	7111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	
법인 등록	· 몽골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 전 몽골 경제개발부(MED)에 법인 등록 필수	
	▼	
수입신고	• 몽골 관세청에 수입신고서 및 각종 통관서류를 구비해 제출 필요 • 제출서류: ① 무역계약서 또는 가격 청구서 ② 운송서류 ③ 포장명세서 ④ 원산지 증명서 ⑤ 수출 당국의 허가·면허 및 인증서 ⑥ 실험실 시험 보고서(필요 시) 등	
	▼	
수입검사	 제품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서류검사를 시행하며, 위험도가 높은 경우 서류·물품·시험검사가 실시될 수 있음 제반서류를 갖춰 수입검역 신청 제출서류: ① ISO인증서 ② 제품 리스트 ③ 가격 리스트 ④ 결제조건 (선결제/후결제) 정보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은 가축병원검역을 실시하며, 식물 및 식물성 식품은 식물검역을 실시 	몽골 수입업체
	▼	
관세 납부 및 반출	•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수출 품목에 대한 몽골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몽골은 식량안보 및 전략물자 취급에 까다롭고,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사전에 품목 확인이 필요함 특히 우유, 분유, 육류, 주류 등에 대한 수입 제한 등 각종 규제 사전 파악이 필요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몽골 수출 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수출신고		〈수출신고 수리 유형〉	
수출신고	서류 심사 후 수리	〈수출신고 수리 유형〉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수출신고	서류 심사 후 수리 현품 검사 후 수리		

수출신고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0- 1 1	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 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수출검역은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 수단 선적		2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몽골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몽골 수입통관·검역 절차

수입업체의 몽골 법인 등록 및 식품 품질 확보

- 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식품 수출입 업무 수행 가능
- 법인 등록 시 △등록 신청서(UB-03 또는 UB-12) △주소 증명 서류 △정관 △자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수입업체의 몽골 법인 등록 및 식품 품질 확보	수입 식품은 자체 식품검수, 품질관리체계(HACCP, GMP, GHP, ISO)를 도입한 생산 공장 생산 필수 수입식품은 통관 시 유통기한의 3분의 2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유기농· 농축산물·유전자 변형 식품의 경우 국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동식물성 식품과 원재료를 수입자가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 이름, 종류, 지역, 국가, 원산지명을 상차 30일 전에 검수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함 식품에는 제조일자와 보존기간 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포장에 명시돼야 하며, 통관 시최대한 유통기한이 길게 남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원칙임 보존 유통기한이 1년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3개월이어야 하며, 보존 유통기한이 6개월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2개월이어야 함
수입신고	- 몽골 관세청에서 승인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CDF)와 각종 통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사전수입신고는 국경을 통과하기 전 혹은 세관에서 정밀검사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 수입신고 시 관세청에 구비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물품 수령 후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함 - 신고인은 하기 서류를 전자우편, 팩스 또는 세관정보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몽골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무역계약서 또는 가격 청구서
수업신고	④ 원산지증명서 -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는 물품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 및 부과됨 - 몽골 정부가 규정한 자국산 전략 품목 중 분유, 우유, 육가공식품(소·말·낙타·염소·양), 밀가루, 생수 수출입 시 라이선스 취득이 선행되어야 함 - 몽골의 경우 통관 및 서류 제출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OECD 국가보다 높은 편임 - 관련 서류를 몽골 관세청에 제출하면 관세청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의 관세를 평가한 후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를 부과함
수입검역	・몽골 관세청은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 실시 - 2018년에 개정한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이 몽골국경 진입 시의 검역 통제, 검사에 관한" 법으로 검역 사안을 규제함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국경순찰대, 식물검역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표준품질인증서 (Standard and Quality Certification)를 제출하는 것에 한해 허가증을 발부함

〈몽골 수입검역 신청 시 제출서류〉

① ISO 인증서

③ 가격 리스트

② 제품 리스트

- ④ 결제조건(선결제/후결제) 정보
- 상기 서류는 수입 검역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수입식품의 서류가 완벽할 경우 보통 1주일 이내로 통관이 가능함
- 제품의 위험도가 낮을 경우 서류 심사로 통관을 진행하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서류, 물품검수, 시험검사를 3개월마다 수행함
 - 제품의 위험도 기준은 하기와 같이 분류되며, 기준에 따라 국경 및 세관 진입 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함
- 검수는 검역의 초기 검수로 제품이 파손 및 변질, 오염, 품질·안정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실시함

▶ 사람 및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

(화물 위험도 기준)

높음 ▶ 몽골에 등록되지 않은 질병이나 해충, 독성 식물 등이 확산되어 몽골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 ▶ 자연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 ▶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 자연환경 및 농작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 ▶ 사람 및 동물,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없음

• 동식물, 동식물 원재료 제품은 가축병원 검역, 식물검역, 검사를 실시하며, 검역 및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몽골 동식물 관련 검역 및 검사 대상 목록〉

- 각종 포유류, 애완 및 야생동물, 파충류, 수생동물, 새, 벌, 그것들의 새끼나 배아, 살아있는 알
- · 고기, 우유, 부속 고기, 지방, 계란, 가죽, 뼈, 모피, 울, 캐시매어, 털, 내장, 뿔, 발굽, 새의 깃털, 오리털, 발톱, 가축의 생식기, 쓸개, 샘 등 동물성 원재료, 제품
- 자연 작물이나 재배된 뿌리채소, 열매채소 등, 나무, 그것의 씨앗, 묘목, 부위
- 곡물, 감자, 채소, 잎, 사료, 원두, 경공업 및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식물성 기타 원재료, 건조된 식물, 수집, 목재, 그것의 일부, 각종 과일, 밀가루, 설탕, 양념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
- 혈 및 혈청, 혈장
- 사냥한 동물
- 각종 병을 유발하는 벌레나 곤충. 미생물 배양. 유전자 변형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생물
- 동물 사체. 분뇨. 병을 유발하는 물질

수입검역

- 동식물, 원재료 제품의 원산지는 동물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식물의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국가 및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제품의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

- 검역 시 국가전문검역청에 제출해야 할 정보 및 서류는 다음과 같음

수입검역

- 동물, 식물, 제품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및 그와 유사한 서류
- 동물, 식물, 제품을 운송할 운송수단 종류, 차종, 도로 경로
- 해당 국경 지역, 기간
- 원자재, 제품 수량, 가공 상태(반가공, 원재료, 냉동, 신선 등), 포장, 상표,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

- 서류 및 물품검사 이후 관세율에 따른 통관 세금을 납부한 물품은 반출 가능
- 몽골은 대외무역에서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낮은 편임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가입으로 인해 수산물, 과실·견과류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었음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관세를 납부하면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해 물품 반출이 가능함
- 수입품의 경우 특별세 부과 대상 외에 기타 물품에 대한 세율은 대략 5% 정도이나, 유제품, 꿀, 갑자, 배추, 순무 등 일부 채소와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계절에 따라 5~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함
- 수입품에 부가가치세(VAT)는 세금 부과 금액의 10%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에 관세와 특별세 등을 부과하여 정함
- 특별세 대상 품목: 술, 와인, 담배, 맥주 등을 포함

● FTA 체결현황

표 10. 몽골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일본 EPA, APTA	한국 EPA, EAEU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표 11.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 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APTA	해당사항 없음	한국-몽골 EPA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갂(단갂). 갂귤,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 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묘목류 : 딸기묘
 - * 상기 품목 외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자료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 축산물

- 돼지고기 및 돼지 지방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12.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E-Mart(Sky Hypermarket LLC) (몽골)
업체 유형	소매업체
담당자명	Ms. Yanjinlkham (영업 담당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전반적으로 한국 식품은 몽골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받으며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음. 특히 라면과 스낵류가 크게 인기를 얻음. 몽골에서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늘어서 이전보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옵션이 다양해짐
- 그동안은 신선 농산물 수입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품질 높은 프리미업급 과일도 몽골에 진입함.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은 멜론, 오렌지, 배 등이며, 인삼도 인기가 많아서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음
- 몽골 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느리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받아드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과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몽골 소비자들은 수산물에 관심이 있어 어류를 기대되는 품목으로 꼽을 수 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최근 한국 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층은 증가 추세임. 그러나 몽골에서는 물류 시스템이 아직 그다지 발전되지 않았고, 가격에 민감해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수요가 일정하지 않음. 따라서 몽골 시장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접근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이슈

- 식품 수입과 관련된 큰 문제는 없음. 몽골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뒤늦게 인식한 편임. 그러나 수입업자들이 전문적으로 수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운송이나 물류 문제가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영향을 미친 소수의 사례 외에는 문제가 없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식품규격 코덱스(CODEX)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CODEX 식품 규격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s://www.foodsafetykorea.go.kr/ portal/specialinfo/codexStandardList. do?data_type=STAN&menu_grep=MENU_ NEW04&menu_no=2926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개정사항 없음

(2) TBT⁴⁾

♪ 주요 TBT 내용

• 최근 몽골에서 발표한 주요 TBT 규정 내용 없음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규정	몽골 식품법 1999	https://faolex.fao.org/docs/pdf/mon42182.pdf
MNS 표준	몽골표준계량원	https://estandard.gov.mn/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표기언제품명성분 목	•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일련번호 • 영양 성분
71HI	표기언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으나, 특수 식단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해 용도, 성분, 사용 지침은 몽골어로 표기되어야 함
표기사항		식품의 성질과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명칭과 고유명칭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기재해야 함
(카이드)		식품의 유형, 형태, 가공 방법 및 조건을 포함하여 제품의 특성 및 물리적 성질에 대해 식품명과 관련한 추가 용어(예: 건조, 농축, 재활용 또는 훈제 등)를 라벨에 작성할 수 있음

⁴⁾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성분 목록	라벨에는 식품 원료에 포함된 성분명을 성분 중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기능성 분류에 따라 기재되는 식품 첨가물 외 원재료 함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성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음
		식품에 사용되는 식염수, 시럽, 수프의 경우 수분함량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나 이 외 식품에 함유된 수분은 다른 원재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함 - 단, 처리 중 증발하는 물 및 기타 휘발성 물질은 기재하지 않음
		식품 첨가물에 해당하는 화합물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표시하고 그 뒤에 첨가물의 구체적인 명칭을 붙여야 함 - "천연", "천연 맛과 유사" 및 "인공"과 같은 단어는 "조미료", "향미료" 또는 "변성 전분"과 같은 식품 첨가물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함께 사용될 수 있음 - 식품에 사용된 첨가물의 양이 그 기능(예: 산도 조절, 향미 증진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첨가물을 성분 목록에 포함해야 함 - 첨가물이 원래 필요량보다 적게 첨가되었을 경우, 라벨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라벨		5% 이상의 유전자변형식품(GMO)를 함유할 경우, 반드시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유전자변형식품의 명칭 옆에 원산지를 함께 표기해야 함 - GMO 유래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식품은 Non-GMO, GMO Free 등의 문구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표기사항 (가이드)		방사선 처리된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식품명 근처에 방사선 처리에 대한 설명을 표기해야 함 - 이 때 식품명 부근에 국제 방사선 식품 표시 로고를 표기할 수 있음 - 또한 방사선 식품이 다른 가공식품의 구성요소로 사용된 경우, 해당 가공식품의 성분 목록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함
	순중량과 건조중량	순중량은 "SI"체계(국제단위계)로 식품명이 표기된 위치에 눈에 띄도록 표시되어야 함 - 액체 제품의 부피는 L 또는 mL로 표기하며, 건조식품의 중량은 g 또는 kg으로 표기함 - 밀도가 높고 점성이 있는 식품은 중량 또는 부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가능함
		액체와 함께 담긴 식품의 경우 순중량 외에 건조중량을 표시해야 함(액체에 현탁된 경우에는 배출된 음식물의 중량을 표기) - 액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물, 설탕과 소금의 액체 용액, 과일 및 채소 주스 통조림, 단일 및 혼합 식초가 포함됨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일련번호	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제조업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수입 및 수출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입되어야 함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원산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여러 국가에서 가공된 식품의 경우, 마지막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표시함
		각 식품 용기에는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함

보파 표시 및 보관 지침 사전포장식품의 식품 라벨 표준이 아닌 다른 식품 법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라벨에는 식품의 제조일과 유통기한(또는 만료일자)이 표시되어야 함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인 식품은 유통기한을 '월/일'로 표기하고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은 '월'을 표기함 - 유통기한은 YYYY/MM/DD 또는 DD/MM/YYYY의 형식으로 표기 가능함 유통기한 이외에도 식품의 보관 조건을 표기해야 함 사용 지침 사용 지침 제품 사용 지침은 식품 라벨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반제품의 경우 완전한 가공을 위한 지침(조리법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부족하다면 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성분별로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함 - 칼로리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소금(나트륨), 설탕 함량 - (제품의 영양 보 한 한 이래 정보를 포함하여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착로리 - 선내점은 함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의 형양소의 양 - 시이섬은 함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그 함량 - 지방산의 종류와 함량,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설명의 경우 지방 및 포화지방의 하위 조항을 추가하여 불포화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의 양을 표시 - 몽골에서 섭취를 권정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표기(다만 100g, 100ml 또는 1인분에 함유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당국의 권장량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자용 지침 가공을 위한 지침(조리법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영양 정보는 숫자와 공백으로 영양성분표에 표기되어야 하며, 라벨의 공간이 부족하다면 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성분별로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함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은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칼로리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소금(나트륨), 설탕 함량 - (제품의 영양가 및 건강 영양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영양소의 양 - 식이섬유 함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그 함량 - 지방산의 종류와 함량,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설명의 경우 지방 및 포화지방의 하위 조항을 추가하여 불포화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의 양을 표시 - 몽골에서 섭취를 권장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표기(다만 100g, 100ml 또는 1인분에 함유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당국의 권장량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및 보관	라벨에는 식품의 제조일과 유통기한(또는 만료일자)이 표시되어야 함 -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인 식품은 유통기한을 '월/일'로 표기하고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식품은 '월'을 표기함 - 유통기한은 YYYY/MM/DD 또는 DD/MM/YYYY의 형식으로 표기 가능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부족하다면 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영양성분별로 순차적으로 기재해야 함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은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칼로리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소금(나트륨), 설탕 함량 - (제품의 영양가 및 건강 영양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영양소의 양 - 식이섬유 함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그 함량 - 지방산의 종류와 함량,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설명의 경우 지방 및 포화지방의 하위 조항을 추가하여 불포화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의 양을 표시 - 몽골에서 섭취를 권장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표기(다만 100g, 100ml 또는 1인분에 함유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당국의 권장량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사용 지침	
(가이드) 식품의 영양 성분 함량은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칼로리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소금(나트륨), 설탕 함량 - (제품의 영양가 및 건강 영양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영양소의 양 - 식이섬유 함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그 함량 - 지방산의 종류와 함량,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설명의 경우 지방 및 포화지방의 하위 조항을 추가하여 불포화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의 양을 표시 - 몽골에서 섭취를 권장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표기(다만 100g, 100ml 또는 1인분에 함유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당국의 권장량의 5%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영양소 함량 표시는 숫자 또는 백분율로 기재해야 함	영양 성분	- 칼로리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소금(나트륨), 설탕 함량 - (제품의 영양가 및 건강 영양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영양소의 양 - 식이섬유 함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그 함량 - 지방산의 종류와 함량,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설명의 경우 지방 및 포화지방의 하위 조항을 추가하여 불포화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의 양을 표시 - 몽골에서 섭취를 권장하는 비타민과 미네랄만 표기(다만 100g, 100ml 또는 1인분에 함유된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당국의 권장량의 5%에 미치지 못할
		영양소 함량 표시는 숫자 또는 백분율로 기재해야 함

^{*} 자료 : 몽골 관세청

• 과일류

라벨링 사진

Олон жиме мике 2024.07.06 08:00 цаг 600 гр 2024.07.08 22:00 цаг

рц Луу жимс, жүрж, ногоон, шар амтат /в, усан үзэм, ананас, киви, алым Санамж: Бүтээгдэхүүнд орсон жимсэнд харшилтай хүмүүс болгоомжил!!!

Хаяг БЗД, 12-р хороо, Отгон фүүдс XXK-ны байр. 72-722-722, Otgonfoods@gmail.com

Хадгалах нехцел 10-с доош хэмд хөргүүрт хадгална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오트거 푸드 종합 과일 믹스
성분	용과, 오렌지, 녹색, 노란 고구마, 포도, 파인애플, 키위, 사과
용량	600g
주의사항	과일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보관조건	10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주소	BZD, 12구역, Otgon Foods LLC 건물 72-722-722, Otgonfoods@gmail.com
제조기한	2024년 7월 6일 08:00
유통기한	2024년 7월 8일 22:00

● 인증

[선택 인증]

• MNS 인증

- 몽골표준계량원(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은 1998년부터 몽골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품질인증인 MNS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MNS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함. MNS 인증은 모든 수입품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은 아님. 그러나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수입품은 2005년 제정된 '규격화 적합평가에 대한 추가 규정 127호'에 따라 ISO나 HACCP 등의 국제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MNS 인증을 받아야 함

장	조	열	국가코드	상품명
02				고기, 식품
04	04.02			설탕 및 기타 양념에 들어가는 원액 우유
	04.03	0403.10.	00	요구르트
	04.05			버터, 우유 기름, 진한 버터
	04.06			치즈, curds from sour milk
05	05.04			가축, 동물의(생선 외) 내장
09	09.01			로스티드커피 및 원두커피, 카페인 커피, 무카페인 커피
	09.02			맛, 향이 첨가된 차, 첨가되지 않은 차(ferment, no ferment tea)
11	11.01	1101.00		밀, 호밀
	11.02	1101.00		밀, 호밀 외 기타 밀가루
	11.04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곡물
15				가축, 동물 및 식물유
16	16.01			고기, 보조 고기 및 혈액 등 영양식품
	16.02			고기, 보조 고기 및 기타 식품, 캔 식품
	16.04			생선 캔, 생선 알 등의 식품
17				설탕, 설탕 식품
19				곡물, 밀가루, 녹말, 밀가루 식품
21				기타 여러 가지 식품
22				물, 음료, 알코올, 술, 와인, 간장
24				담배, 담배 대체재

^{*}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

인증명	· MNS 인증		
인증기관	• 몽골표준계량원		
강제유무	• 선택		
제출 서류	• 현지 수입업체 신청서, 수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상품 매매계약서, 제품 수량 및 가격, 제품에 대해 수행된 공인 실험실 테스트 결과, 담당 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필요 시), 수출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인증서		

04 수출 애로사항

♪ 검역 인증 지연 관련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채소류
유형*	수입통관
주요내용	 몽골의 수출 검역인증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현지 대리인 신청서 제출 → 2. 3개 부처(식품안전청, 농무부, 환경부) 서류 심사 → 3. 물리적 검사 → 4. 실험실 검사 결과 대기 각 단계별 1~3일 지연이 발생하며, 전체 평균 처리 기간은 육류 4일, 야채류 최대 48일이 소요됨 2023년 7월 개정된 SPS 법규에 다르면, 100% 물리 검사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애로사항	 한국산 채소류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관련 검역 증명서 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해들어, 수출을 고민하게 됨
기타	※ ADB(아시아개발은행) Regional Upgrade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for Trade Project https://ewsdata.rightsindevelopment.org/files/documents/01/ADB-46315- 001_iCRPtX0.pdf

♪ 현지어 작성 관련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주요내용	• 몽골은 라벨을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으나, 특수 식단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해 용도, 성분, 사용 지침은 몽골어로 표기되어야 함 • 용도, 성분, 사용지침에 몽골어 표기가 누락될 경우 통관 지연 또는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애로사항	 자사는 몽골로 식품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나, 영문 병기가 아닌, 몽골 현지어 병기를 진행해야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단순한 번역이 아닌 전문적인 번역을 진행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기타	※ 몽골 MNS 6648 표준(라벨링)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2/TBT/MNG/22_2973_00_x.pdf

♪ 준비 서류 구비 관련

해당국가	몽골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수입통관
	• 몽골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이 기본 수출 서류로 요구되고 있음
	• 수입 식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주요내용	 또한 MASM(몽골 표준화청)이 발급하는 합격증명서 역시 제출해야 하며, 축산물 수출시 USDA 또는 해당국 공인 기관 발급의 수출건강증명서가 요구됨
	• 2025년 현재 SPS IMS 시스템 시범 운영 중:
	* 모든 서류를 PDF로 스캔, 몽골 관세청 포털에 업로드, QR 코드가 포함된 전자 CoC 발급 후 인쇄본 부착
애로사항	• 몽골로 수출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까다로움
기타	※ 2025년 SPS IMS 시스템 시범 운영중 https://www.sgs.com/-/media/sgscorp/documents/corporate/brochures/sgs- gis-mongolia-datasheet-a4-2012-12-v1.cdn.en.pdf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육개장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수입 요구 조건 충족 여부
- 식품 수출입 구비서류 및 절차
- 식품 수출입 검사 절차

♪ 제품 조사 결과

- 수입 요구 조건 충족 여부
 - 몽골 수입 제품은 몽골의 법령과 국제조약에 맞게 관세청에서 제정한 '식품원재료, 제품 수입 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몽골의 경우 식품마다 특별히 요구되는 상세한 요건이 없기에 상기 규례에 의거 수입이 가능

• 구비서류

- 1) '식품법' 제11조에 따른 식품 수출입 시 요구조건
- 국가등록증(법인): 식품은 오직 몽골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만 수출입할 수 있음. 개인은 식품 및 원재료를 수입할 수 없음
- 무역계약서: 수출국 공장과 직접 또는 공장의 공식 계약 매매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에는 수량, 개당 가격을 기입하며, 제품을 생산한 날짜와 종료 기간, 포장기준요건, 유통규칙의 준수, 운송수단의 위생성, 운송기록 작성에 관하여 기재함
- 품질 기준 충족을 인증하는 문서(HACCP, GMP, GHP, ISO): 수입 식품은 4가지 인증서 중 한 가지를 구비해야 함
- 제품 생산 날짜 및 유통기한을 문서 및 라벨지에 기재: 몽골 국경으로 물품을 보낼 때에는 수입 식품의 보관기한이 3분의 2 이상 유효해야 함
- 기준, 기술 요건이 충족된 운송수단에 대한 증명 문서: 기준 및 기술적 요건이 충족된 보관창고, 운송수단이어야 함. 운송수단의 기술적 기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며, 온/냉방을 조절할 수 있는 우송수단으로 우송해야 함

- 2) '식품 안전성 보장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른 수출입 식품의 원재료
- 수출국, 생산자가 실시한 식품 검사에 관한 평가서: 수입 식품의 원재료의 안정성은 몽골국 및 국제적 지역 내에서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함

•검사

- 운송요건: 용도에 부합하는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였는지 여부, 운송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 보존이 가능한 운송수단 여부, 식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품과 함께 운송했는지 확인
- 포장 상태: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포장인지 여부를 확인
- 라벨링: 제품명, 종류, 수량, 규모 등이 라벨지에 작성되어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성분표시에 정확성, 생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보관 기간에 관한 정보 기재 여부 확인
- 라벨링 관련 근거법령인 식품 안전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라벨링 시 다음과 같은 정보 기입
 - * 제품 생산년월일, 보관기간 또는 사용기간
 - * 식품 생산자, 수출입자, 공급자, 수입자,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 생산국명
 - * 식품 원재료명 / 무게, 규모 / 영양분 / 성분표시 / 사용 방법
 - ** 수입식품 원재료 및 제품의 라벨에는 몽골어, 영어, 러시아 언어 중 한 가지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하며, 특수 식단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한 용도, 성분, 사용 지침은 반드시 몽골어로 표기

• 수출업체의 준비사항 및 필요 조건

- 국가에 사업체로 등록된 법인이야 함
- 매매계약서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인보이스(Invoice)
- 워산지증명서
- 대금지급 증명서(두 회사 간 계좌 이체 내역)
- 품질, 표준, 적절한 숙련, 경영체계 도입을 증명한 서류(HACCP, GMP, GHP, ISO)
- 식품 용기, 포장 요건 충족
- 수입식품의 보관 기간의 2/3 이상이 남아있을 것
- 수출국, 생산자가 식품에 대해 행한 분석 결과
- 어느 지역 세관을 통과하는지에 따라 해당 세관원이 실험실 통과 여부를 결정함

• 통관 절차 내 주의사항

1) 서류 검토

- 구비서류 및 세관 과표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인정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근거자료로 수입자-수출자 간의 계약서 및 은행 송금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함. 또한, 구체적인 기재를 갖추지 않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의해 세관 검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에는 화물에 대한 내역, 용도, 용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음

2) 세금 납부

-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납부 고지서에 근거하여 은행 또는 시세관에 세금을 납부함.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식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음

3) 실물 확인(검사)

-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실물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최종 확인 후 화물을 반출하며, 실물과 서류가 상이할 경우 재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관세율

- 식품 관련 기본 관세율은 울란바토르 도착을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 및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의 15.5%임

♪ 자문 결론

- 몽골 식품 수출 시 몽골 법령 및 국제조약에 따른 수입 요구 조건 충족 필수이며, 특별한 개별 요건은 없으나 관세청 규정 준수 필요함
- 수출을 위해 국가등록증(법인), 무역계약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인증서(HACCP, GMP, GHP, ISO),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대금지급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수입 식품의 보관기간이 2/3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라벨은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으나, 특수 식단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한 용도, 성분, 사용 지침은 반드시 몽골어로 표기해야 하며, 포장·운송 요건도 준수해야 함
- 통관 절차 서류 검토 → 세금 납부 → 실물 검사 → 반출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 불충분 시 세관 심사 지역 및 인정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수
- 기본 관세율 15.5% 적용되며, 운송비 포함 가격 기준으로 부과됨